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안 산 시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안 번호	10-34
----------	-------

제출년월일 : 2026. 8.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위탁·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한 재계약 결정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 53조의 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의2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운영
- 시설현황

구 분	내 용	비고
시 설 명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現 위탁기관	아이들세상 함박웃음(대표자 : 오창종)	
現 위탁기간	2021. 9. 17. ~ 2026. 9. 18. (최초위탁)	5년
소 재 지	비공개시설	
규 모	101.86㎡ (방 4, 화장실 2)	
정 원	7명	
종 사 자	6명 - 시설장 1, 보육사 4, 임상심리상담원 1	

- 민간위탁기간 : 2026.9.19. ~ 2031.9.18.(5년)

- 민간위탁 사무내용 :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 피해아동 보호, 숙식, 생활 지원
 - 피해아동 상담 및 치료(심리검사,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치료 등)
 - 종사자 채용·관리 및 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등 센터 운영 전반
- 위탁방법 : 재계약(성과평가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필요성

-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상담·치료 및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필수적임.
- 현 수탁법인은 위탁기간 동안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준수하며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 보호, 상담·치료연계, 사례관리 등 주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음.
- 이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 수탁법인의 운영 성과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성과 평가 결과 ※

구분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남아시설)	평가기간	비고
평점	95.3	2021.9.17.~2026.3.31.	60점 이상 적합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결과 ※

구분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남아시설)	비고
평점	85.4	70점 이상 재계약 결정

-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1】
-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붙임 2】
- ☐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 ☐ 방침결정문 : 【붙임 4】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아동복지법」 제53조의 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치료
 -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 제16조(재계약) ① 수탁기관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계약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등) ①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와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인력,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능력)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위탁사무명 :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운영

검토항목	검토내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학대피해아동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탁을 요하는 사무임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 정기적인 지도 감독으로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3. 경제적 효율성	○ 위탁 운영관리 철저 및 전문성 활용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등 경제적 효율성 확보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학대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 및 사례관리 등은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임. ○ 수탁기관은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과 운영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계획 대비 실적, 입소아동 보호 현황, 상담·치료 지원실적, 예산집행 실적 등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통해 사업성과 측정이 가능함.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정기적인 지도 감독과 분기별 정산검사를 통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 보호, 상담·치료, 사례관리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전문인력과 운영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민간위탁운영이 적정함.
검토 종합 의견	○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운영사무는 공공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무로서 민간의 전문인력과 운영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현재 수탁기관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상담·치료 지원 등 시설 운영 전반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중대한 지적사항 없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u>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 하다고 판단됨.</u>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및 제12조(사업비의 자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안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위탁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내시 산출 근거에 따라 편성
- 2026년 위탁운영비 소요액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비 고
총 소요액		2,193,451	413,147	425,541	438,307	451,456	465,000
안산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1개소)	생계비	122,058	22,990	23,680	24,390	25,122	25,876
	운영비 (국비)	1,673,321	315,178	324,633	334,372	344,403	354,735
	인건비 추가	398,072	74,979	77,228	79,545	81,931	84,389

○ 2026년 연간 보조금

(단위: 천원)

시설명	보조금				비고
	계	생계비	운영비(국비)	인건비 추가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401,113	22,320	305,998	72,795	

다. 재원조달방안: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보조사업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작 성 자: 복지국 아동권리과장 김보영

(제2-2쪽)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7년)	2차연도 (2028년)	3차연도 (2029년)	4차연도 (2030년)	5차연도 (2031년)	계
세 입		413,147	425,541	438,307	451,456	465,000	2,193,451
국·도비보조금		250,015	257,515	265,240	273,197	281,393	1,327,360
지방세수입		163,132	168,026	173,067	178,259	183,607	866,091
세 출		413,147	425,541	438,307	451,456	465,000	2,193,451
생계비		22,990	23,680	24,390	25,122	25,876	122,058
운영비(국비)		315,178	324,633	334,372	344,403	354,735	1,673,321
인건비 추가		74,979	77,228	79,545	81,931	84,389	398,072
재원 조달		413,147	425,541	438,307	451,456	465,000	2,193,451
의존 재원	소 계	250,015	257,515	265,240	273,197	281,393	1,327,360
	국·도비보조금	250,015	257,515	265,240	273,197	281,393	1,327,36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63,132	168,026	173,067	178,259	183,607	866,091
	지방세수입	163,132	168,026	173,067	178,259	183,607	866,091
	세외수입	-	-	-	-	-	-